

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7일

발의자 : 이영아 의원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의 통장 위촉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위촉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통장의 위촉대상 연령을 19세로 조정함(안 제5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17. ~ 1. 25.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7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 중 “25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